

제7조(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) 법 제1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「국토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,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. [<개정 2010. 1. 7.>](#)

1.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물류시설 · 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3.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 ·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4.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(이하 "지역물류정책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(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지역물류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에 인접한 시 · 도의 시 ·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해당 시 · 도에 인접한 시 · 도의 시 · 도지사, 관할 시 · 군 및 구(지방자치단체인 시 · 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 · 군 · 구"라 한다)의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(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③ 해당 시 · 도에 인접한 시 · 도의 시 · 도지사, 관할 시 · 군 · 구의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 · 도 또는 시 · 군 · 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 삭제 [<2024. 7. 2.>](#)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이 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[<개정 2024. 7. 2.>](#)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09. 4. 30.>](#)

③ 삭제 [<2015. 12. 31.>](#)

제10조의2(위원의 해촉 등)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 [<개정 2024. 7. 2.>](#)

1.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31.]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·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